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5호 2020. 6. 22.(월)

조 례

- 목포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2
-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5
-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목포시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15
-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25
-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8
-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33
-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5
-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37
-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47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50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53

회람							
----	--	--	--	--	--	--	--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6 호

목포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목포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목포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목포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목포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의회장 공고) 위원회가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목포시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기계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5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 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12개월 $\times$ 연체일수/365일
- 1개월 초과 : 미납요금 $\times$ 3/10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신 설>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 미납요금×3/100×12개월× 연체일수/365일 - 1개월 초과 : 미납요금×3/10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신 설>	제27조의 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4 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이상”을 “이상의”로, “금융기관에”를 “금융기관의”로 한다.

제6조 중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같은 항 제17호 “영 제32조제2항 각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보강사업”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으로, 같은 항 제19호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10조제2항 중 “3분의 1이상”을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3항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제67조와 같은 법 <u>시행령 제75조</u> ----- -----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u>법정적립액</u> 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u>법정적립액</u> 총액의 100분의 15 <u>이상</u>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관리) ① ----- ----- ----- <u>최저적립액</u> ----- ----- <u>리액</u> ----- ----- ----- <u>매년도 최저적립액</u> ----- ----- <u>이상의</u> ----- ----- <u>의</u> ----- ----- ----- ----- ----- -----.
제6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u>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할 수 없다.

17. 영 제32조제2항 각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시장이 관리하
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
· 보강사업

19.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
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 설>

<신 설>

17.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19.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
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
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
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
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
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

-----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 설><신 설><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
항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
-- -----
-----.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3 호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 정보처리 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를 말한다. (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8.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 “정보주체”란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목포시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 ·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 및 예산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 · 경찰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취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관제의 범위)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유관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국장 및 부서장,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련분야(CCTV, 방범예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계센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이해 당사자나 관계인은 해당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와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척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8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하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2 호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법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법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1 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을 “**작은도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를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6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삭제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제17조 중 “또는 동주민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각각 설치한다”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① (생략)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u>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u>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 ----- ----- 작은도서관 ----- -----.
② 시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u>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 할 수 있다.	② -----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 -----.
③ 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 6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일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하여야한다.

1. 매주 월요일
2. 추석과 설날연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시간) -----
-----.

1. -- 5일 -----
-----.
2.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삭 제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3. 법정 공휴일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7조(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또는 동주민센터별로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각 설치한다.

제21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직원을 간사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해촉) ①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
을 떠나게 된 경우

2. ~ 5. (생략)

② (생략)

규정」에 따른 공휴일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제17조(설치) -----
----- 운영
위원회-----
-----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
----- 행정
복지센터 -----
-----.

제22조(해촉) ① -----

-----.

1. --- 동 행정복지센터-----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80 호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목포시장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9 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공공기관</u>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경찰 등 공공기관</u>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8 호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 참여예산”이란 아동이 정책제안, 의견수렴, 사업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목포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아동 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의 성장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 ③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참여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 아동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아동과 관련된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아동참여예산의 심의·확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을 위한 공간 확보) ① 시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전용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10조(아동 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아동예산) ①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

해야한다.

제12조(아동 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아동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 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5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2.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3.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6조(보조금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제17조(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사회복지 및 아동 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7. 아동 대표

8. 아동 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한다.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구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구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7 호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책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6 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 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 단체 ·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7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5 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월50,000원”을 “월6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보훈 기본법」 ----- ----- ----- ----- ----- -----.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단체” 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생 략)	제3조(정의)----- ----- 1.~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 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 ----- ----- ----- -----. 5. (현행과 같음)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월60,000원 ----- -----. ② (현행과 같음)